

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3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.

나.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,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,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·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- 1)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: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.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2)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: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사업종류별 처분내용		
		국내 및 국제 항 공운송사 업	소형항공 운송사업	항공운송 총대리점 업
1. 면허·등록·허가 및 신고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호	면허 취소	등록 취소	
나. 법 제7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2호	면허 취소	등록 취소	
다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기준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	법 제28조제1항제3호	면허 취소	등록 취소	

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				
2.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4호	면허 취소	등록 취소	
3. 사업계획				
가.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5호	사업 일부 정지 (30일)	사업 일부 정지 (30일)	
나.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6호	사업 일부 정지 (30일)	사업 일부 정지 (30일)	
다. 법 제12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6호	사업 일부 정지 (7일)	사업 일부 정지 (7일)	
4. 운임 및 요금				
가.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7호	사업 일부 정지 (10일, 국 제항공운 송사업만 해당한다)	사업 일부 정지 (10일)	
나.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7호	사업 일부 정지 (10일, 국 제항공운 송사업만 해당한다)	사업 일부 정지 (10일)	
다.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	법 제28조제1항제7호	사업 일부	사업 일부	

임 또는 요금과 다른 내용의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둔 경우		정지 (5일, 국제항공 운송사업만 해당한다)	정지 (5일)	
5.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가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 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 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 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.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8호 법 제28조제1항제8호	사업 일부 정지 (15일) 사업 일부 정지 (15일)	사업 일부 정지 (15일) 사업 일부 정지 (15일)	
6.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 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9호	면허 취소	등록 취소	
7.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양도·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0 호 및 제11호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
8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 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	법 제28조제1항제12 호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
9.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 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3 호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
10.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과 된 면허·등록·인가·허가의 조건 또는 기한을 이행하지 않	법 제28조제1항제14 호	사업 일부 정지	사업 일부 정지	

은 경우		(30일)	(30일)	
11. 사업개선 명령 가. 법 제27조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.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5호 법 제28조제1항제16호	사업 일부 정지 (30일) 면허 취소	사업 일부 정지 (30일) 등록 취소	
12. 소비자 보호 가.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나. 법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다. 법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7호 법 제28조제1항제18호 법 제28조제1항제19호	사업 일부 정지 (20일) 사업 일부 정지 (5일) 사업 일부 정지 (7일)	사업 일부 정지 (20일) 사업 일부 정지 (5일)	사업 일부 정지 (5일)
13.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21호	면허 취소	등록 취소	
14. 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22호	면허 취소	등록 취소	